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31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	3

I. 개요

1.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31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3. 24.
- (3) 회 부 일 : 2025. 3.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아플 때도 출근해 일하는 이른바 ‘프리젠티즘’ 현상이 심각함. 한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데도 출근한 사람 수는 아파서 쉬 사람 수의 2.37배로 유럽 국가의 평균 수치인 0.81배를 압도하는 상황임.

이에 더해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을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를 명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196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대로 상병수당의 지급액은 평상시 급여의 66.7%로 하며, 상병수당의 지급 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하도록 하고, 상병수당 지급액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 평균의 66.7%로 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상병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상병수당) ① 공단은 가입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따른 소득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2조의2에 따라 질병휴가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공단에 상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u>장제비</u>,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u>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상병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u> <u>⑤ 제1항에 따른 상병수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라 해당 기간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및 소득을 말한다) 평균의 1천분의 667을 지급한다.</u> <u>⑥ 그 밖에 상병수당의 지급대상, 지급신청, 지급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0조(부가급여) ----- ----- ----- -----<u>장제비</u>----- -----.
---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상병수당(傷病手當)’ 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임¹⁾.

- 현행법 제50조²⁾에는 상병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³⁾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을 부가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⁴⁾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는 1952년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제102호 협약)’을 채택하여 각국에 상병수당 도입을 권고한 이후, 1969년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협약(제130호 협약)’, ‘의료 및 상병수당에 관한 권고(제134호 권고)’를 차례로 채택하여 상병수당의 하위기준 및 상위기준을 제시한 바 있음.

-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OECD에 가입한 38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스위스, 이스라엘, 미국 일부주를 제외한 34개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⁵⁾

1) 국회입법조사처,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및 시사점 검토, 2017.

2)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4) 참고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최대 2년간 봉급의 50~70%를 지급받을 수 있음. 민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근로조건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음.

5)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 2023

< ILO 사회보장 관련 협약 등에서의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 >

구분	최저기준 협약 (제102호 협약)	상병수당 협약 (제130호 협약)	상병수당 권고 (제134호 권고)
적용범위 (경제활동인구 대비)	20% 이상	75% 이상	100%
최대보장 기간	26주 이상	52주 이상	모든 기간
급여수준	이전 소득의 45% 이상	이전 소득의 60% 이상	이전 소득의 66.7% 이상

자료: 보건사회연구원

□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 도입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한국형 상병수당 추진단’ 등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일반회계 사업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에 6개 지역(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024년말 종료되었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3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7월부터 4개 지역(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음.

- 대상자는 해당 지역 거주 또는 소재 사업장의 15~64세 취업자로, 1단계 사업의 경우 소득기준 없이 대상지역에 따라 근로활동불가모형과 의료이용일수모형으로 구분하고⁶⁾ 대기기간(3일, 7

6) 시범사업에서 활용한 상병수당 유형은 ①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불가모형’과, ② 입원이 발생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 수 만큼

일, 14일)과 최대보장기간(120일, 150일)을 차등화하여 운영하였으나, 2단계 및 3단계 사업은 현재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⁷⁾ 120% 이하)을 두고 모형(근로활동불가모형), 대기기간(7일), 최대보장기간(150일)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보장수준은 최저임금의 60%(2025년 기준 48,150원)로 하되, 3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025년 5월부터 직전 소득의 60%를 지급하는 정률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 **(대상지역)** 8개 지역*(‘25년 기준) / 공모 선정
 - * 2단계 시범사업(‘23.7~, 4개 시군구) 및 3단계 시범사업(‘24.7~, 4개 시군구)
 - ※ 1단계 시범사업(6개 시군구)은 ‘22.7월~’24.12월 운영 후 종료
- **(대상자)** 해당 지역 거주 또는 소재 사업장의 15~64세 취업자
 - (취업자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 및 매출 증빙)
 - (소득기준) 2단계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3단계 지역은 소득기준 없음
- **(보장수준)** 日당 48,150원(최저임금의 60%), 최대보장기간 150일
 - * 3단계, 정률제 대상자는 직전소득의 60% 지급(하한 48,150원 ~ 상한 66,000원)

< 지역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현황 >

구분	1단계(‘22.7월~’24.12월)			2단계(‘23.7월~)		3단계(‘24.7월~)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 없음 ¹⁾
모형구분 ²⁾	근로불가	근로불가	의료이용	근로불가	근로불가 ³⁾	근로불가
대상지역	부천·포항	서울중로·천안	순천·창원	대구달서·안양	용인·익산	전주·원주·충주·홍성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7일	7일
최대보장기간 ⁴⁾	120일	150일	120일	150일	150일	150일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모형’으로 구분됨.

7)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8인가구: 9,912,051원)

- 1) 3단계 지역은 당초 2단계와 동일한 소득기준 적용하였으나 '25.5월, 정률제 시행 시 소득기준 폐지
- 2) 모형구분: (근로활동불가모형) 요양방법 상관없이 아파서 근로활동 어려운 기간 지급
(의료이용일수모형)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지급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 ①입원, ②재택외래의 각 기간에 대해 별도 기준 적용하여 지급
- 3) 용인·익산지역 모형 변동: 의료이용일수모형('23.7월~'24.9월) → 혼합근로활동불가모형('24.10월~'25.3월) → 근로활동불가모형('25.4월~)
- 4) '24.7월, 1단계·2단계 최대보장기간 확대(1단계: 90일 → 120일, 120일 → 150일 / 2단계: 90일·120일 →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2027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재원조달방식, 적용대상, 급여수준 등을 검토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본 사업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의무급여로 전환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른바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⁸⁾

다만, 상병수당 지급대상·기준, 지급방식 및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및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시행을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의 결과를 참고하여 지급대상 및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개정안에서는 상병수당의 지급액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보수 및 소득 평균의 66.7%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소득의 66.7%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ILO의 ‘제134호 권고’의 상위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이해됨.

- 현재 개정안 외에도 상병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4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⁹⁾ 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각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상병수당 지급기준·방식 등에 대하여 직전 12개월간 보수 및 소득의 66.7%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수진의원안), 10일 이상 연속 입원 시 직전 3개월간 평균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방식(박범계의원안), 지급기준 등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서영석의원안 및 김태년의원안)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유급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3건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 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상병수당 관련 법률 개정은 재원조달방식, 수급요건,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0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96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20)

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40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9305)

보장수준, 유관 제도와의 관계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유관부처·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운영방안 마련 후 법률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

-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현재 진행 중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도입모델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시범사업 결과가 도출된 후 도입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 발생 시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제도 시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는 본 제도 모형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상병수당을 본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방식(조세 vs. 사회보험), 심사방식·기간, 세부 지급기준 등 쟁점이 있어, 동 법률안 개정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원조달 방안
에 대한 고민과 강구가 필요함. 또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주
목적은 질병의 진단·치료·예방에 두는 것이 합당하며 상병수당
은 건강보험이 아닌 사회보장체계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함. 아울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진행 후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분석 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 의 처

02)6788-5503